

제308회 임시회
2012.04.25.(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04.25(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필 교육의원

나. 발의일자 : 2012년 04월 06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04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04월 17일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필 교육의원)

가. 제안이유

2009년에 개정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특수한 재능이 있지만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조례의 목적과 특별장학생 요건 간에 불일치한 부분과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확대 및 공정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어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확대하고 선발 심의과정 체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높은 자,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으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1조).
-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제2조에 신설 함 (안 제2조 4호).
- 특별장학생 선정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선정함(안 제4조).
-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장학생 선정 및 지원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가하여 특별장학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 특별장학생 선정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장학생 대상자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선정과정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높여 특별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또는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취학대상자”를 “입학대상자”로, “학업에 정려하며”를 “학업에 노력하며”로 하고 제1호, 제2호 중 “제1학년 학생에”을 “제1학년 입학대상자에”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행, 효행,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 후보자 추천은 각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

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국장 또는 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의 <u>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특별장학생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고등학교의 <u>취학 대상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전 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중학교 <u>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u>) 2.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고등학교 <u>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u>) 3. (생략) 4. <u>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u> <p>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u>중·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따른 특별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교무회의의 심</u></p>	<p>제1조(목적)----- ----- -----<u>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또는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u> ----- -----.</p> <p>제2조(특별장학생요건)----- ----- -----<u>입학대상자</u>----- -----<u>학업에 노력하며</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제1학년 입학대상자에</u> -----) 2. ----- ----- -----(<u>제1학년 입학대상자에</u> -----) 3. (현행과 같음) 4. <u>선행, 효행,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u> <p>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u>장학생 후보자 추천은 각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u></p>

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국장 또는 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은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